역구매론 판매기업 계약서 (기업용)

(판매기업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_____(이하 "판매기업"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물품 및 용역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구매한 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판매기업이 은행의 "역구매론" 결제제도를 이용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수금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기업"이라 함은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
2. "판매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
3. "지급승인명세"(이하 "승인명세"라 함)라 함은 판매대금 수금을 위해 판매기업이 전송하는 판매자료를 말하며, 판매기업이 수금하기 위하여는 은행의 지급승인이 필요합니다.
4. "지급승인금액"(이하 "승인금액"이라 함)이라 함은 승인명세 상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지급할 구매대금을 말합니다.
5. "판매기업입금일"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대금을 입금받는 일자를 말하며, 통상 구매기업의 결제일과 동일한 일자로 지정합니다.
6. "구매기업결제일"(이하 "결제일"이라 함)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일자로서, 승인금액의 상환일을 말합니다.
7. "선입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입금일 전에 판매기업이 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8. "지급승인기간"이라 함은 승인명세 전송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9. "선입금기간"이라 함은 판매기업입금일 전에 판매기업이 선입금하는 경우, 선입금된 날로부터 판매기업입금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10. "거치기간"이라 함은 판매기업입금일을 통상의 경우와 달리 결제일 이전으로 지정한 경우, 판매기업입금일로부터 결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자부담주체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분할상환기간"이라 함은 승인명세 상 구매기업의 개별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간을 말하며, 이자부담주체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2. "연장기간"이라 함은 승인금액의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약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13. "지급보증"이라 함은 승인금액에 대하여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명세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승인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4. "일반거래"라 함은 승인명세 전송 및 은행의 지급승인과 동시에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15. "매매보호거래"라 함은 상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인명세 전송 후 구매기업의 권리이전(인수) 및 은행의 지급승인 절차에 의해 승인금액의 권리가 판매기업으로 이전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16. "선입금가능일"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선입금할 수 있는 최초 시작일을 말합니다.
17. "기업인터넷뱅킹"이라 함은 HanaCBS Light, HanaCBS, BiCNET 등을 말합니다.
18. "전자적인 방식"이라 함은 구매자료 전송, 선입금 등 역구매론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제3조(입금계좌의 지정)

판매기업 입금계좌는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판매기업 본인의 입금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실명번호	계좌번호

제4조(지급승인한도 및 대상거래처의 선정)

1.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판매한 물품 등의 판매대금 수금을 위하여 전송하는 승인명세는 아래의 지급승인한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승인금액의 총잔액은 지급승인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지급승인한도를 직접 기재합니다.)

지급승인한도	금 원

2. 지급승인한도의 적절한 분배를 위하여 구매기업별 최고승인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별 최고승인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 표시하고 최고승인한도를 직접 기재합니다.)

□ 사용함 □ 사용하지 않음	구매기업별 최고승인한도	금 원

3. 본 계약에 의하여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대상은 판매기업이 추천하는 거래처로서, 은행과 역구매론 약정을 체결한 구매기업으로 하되,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4호에 해당하거나 기타 이에 유사하여 은행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단, 은행의 내규에서 수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5-06-0559(5-1) / (2013. 07. 01 개정)
(보존년한 : 약정해지후 5년)
준법감시인 심사필 약관-13-111(2013.4.17)

하나은행

제5조(신용공여기간)

본 계약의 만료일 및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신용공여기간을 직접 기재합니다.)

구 분	신용공여기간
계약기간 만료일	20 년 월 일
지급승인기간	최장 ( )일 (최장 180일 범위내)
분할상환기간	최장 ( )개월 (최장 36개월 범위내)
연장기간	최장 ( )일 (최장 180일 범위내)

※단, 분할상환기간이 적용되는 승인명세에 대하여는 연장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6조(매매보호의 적용)

1. 판매대금 회수를 위한 승인명세 전송시 매매보호거래 적용여부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 표시합니다.)

구 분 (택1)	내 용
□ 전체 일반거래	모든 승인명세에 대하여 일반거래로 하며, 매매보호거래를 적용하지 아니함
□ 전체 매매보호거래	모든 승인명세에 대하여 매매보호거래를 적용함
□ 승인명세에서 지정	승인명세 건별로 매매보호거래 여부를 지정할 수 있음.

2. 매매보호가 적용된 승인명세는 구매기업의 권리이전(인수) 절차가 있어야 선입금 또는 만기입금이 가능하며, 판매기업입금일 전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의 권리이전(인수) 절차가 없으면 판매기업입금일에 자동취소됩니다.

제7조(구매기업의 대출 이자율 등)

① 구매기업 명의의 대출실행시 대출이자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거래조건에 대한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 표시하고 금리를 직접 기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금리구분 (택1)</th><th>기준금리</th><th colspan="6">가산금리 (고정금리의 경우 적용금리)</th></tr>
<tr><td rowspan="3">□ 변동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td><td rowspan="2">선입금이자
거치기간이자
분할상환이자</td><td rowspan="3">( )</td><td>1~15일</td><td>16~45일</td><td>46~75일</td><td>76~105일</td><td>106~195일</td><td>196일 이상</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연장기간이자</td><td colspan="6">( )%</td></tr>
<tr><td rowspan="2">□ 고정금리</td><td>선입금이자
거치기간이자
분할상환이자</td><td colspan="7">연 ( )%</td></tr>
<tr><td>연장기간이자</td><td colspan="7">연 ( )%</td></tr>
<tr><td colspan="2">이자 계산방법</td><td colspan="7">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td></tr>
</table>

※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경우

1. 이자 종류가 다른 경우에도 기준금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선입금기간,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기간이 모두 있는 경우 가산금리는 모든 기간을 합산한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 91일물CD란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의 91일물CD유통수익률로서, 대출실행일에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고시한 직전 영업일의 유통수익률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4. 기간별FTP란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로서, 대출실행일에 은행이 고시한 FTP기준금리를 적용하기로 하며, FTP기준금리는 기간별 시장실세금리에 은행의 신용도 및 경영정책 등을 반영한 ALM Spread를 가감하여 산출합니다. 시장실세금리는 1일물의 경우 콜금리, 3개월물의 경우 91일물CD유통수익률, 6개월물의 경우 AAA등급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등을 말합니다.

② 대출이자 확정시기는 이자 종류별로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1. 선입금이자 : 선입금 실행일의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에 의하여 금리가 확정됩니다.
2. 거치기간이자 : 판매기업입금일의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에 의하여 금리가 확정됩니다. 단, 판매기업입금일 이전에 선입금 실행되는 경우 선입금 실행일의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에 의하여 금리가 확정됩니다.
3. 분할상환이자 : 판매기업입금일의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에 의하여 금리가 확정됩니다. 단, 판매기업입금일 이전에 선입금 실행되는 경우 선입금 실행일의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에 의하여 금리가 확정됩니다.
4. 연장기간이자 : 당초 약정된 연장기간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별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에 의하여 결제일에 금리가 확정됩니다.

③ 대출이자는 대출이자 종류별 이자부담 주체가 판매기업인 경우에는 대금입금시 차감하여 징구하며, 구매기업인 경우에는 결제시 징구합니다.

1. 선입금이자 : 선입금시 판매기업이 부담합니다.
2. 거치기간이자 : 판매기업이 승인명세 전송시 지정한 부담주체가 부담합니다.
3. 분할상환이자 : 판매기업이 승인명세 전송시 지정한 부담주체가 부담합니다.
4. 연장기간이자 : 구매기업이 부담합니다.

5-06-0559(5-2) / (2013. 07.01 개정)
(보존년한 : 약정해지후 5년)
준법감시인 심사필 약관-13-111(2013.4.17)

하나은행

제8조(수수료의 운영기준)

역구매론 이용시 아래와 같이 지급승인 건별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수수료 운영기준에 대한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 표시하고 수수료금액을 직접기재합니다.)

① 취급수수료 : 지급승인 건별 부담하는 수수료로서, 구매기업 결제계좌 지정은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합니다.

부담주체	계좌지정은행	취급수수료	징수시기
□ 구매기업	하나은행	원	구매기업부담시 : 결제일에 징구
□ 판매기업	타 행	원	판매기업부담시 : 대금입금시 차감

② 선입금미실행수수료 : 은행이 지급보증하는 지급승인 건별로 판매기업의 선입금 미실행 잔액에 대하여 판매기업이 부담하는 지급보증료 성격의 수수료로서,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합니다.

선입금미실행금액	선입금미실행수수료	비 고
일백만원 이하	면 제	(1) 승인명세 건별 선입금 소진율 70% 이상인 경우 면제 (2) 지급승인일로부터 판매기업입금일까지의 잔여기간이 7일 이하인 경우 면제
일천만원 이하	원	
오천만원 이하	원	
일억원 이하	원	
일억원 초과	원	

제9조(승인명세의 전송, 취소 및 변경, 제한)

① 승인명세의 전송, 취소 및 변경은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1. 판매기업은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 등의 판매대금 수금 용도로만 승인명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승인명세의 항목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3. 승인금액은 최소 일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분할상환기간 지정시 승인금액은 최소 일십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승인명세 상 결제일 또는 판매기업입금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 익영업일로 자동으로 이연하여 처리합니다.

5. 승인명세 상 결제일은 계약기간만료일을 초과하여 지정이 가능하며, 상환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가. 만기일시상환방식 : 결제일이 계약기간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나.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최초 도래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일이 계약기간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6. 판매기업은 기업인터넷뱅킹, 펌뱅킹서비스 등 전자적인 방식으로 승인명세를 전송, 취소 및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관리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승인명세등록신청서 및 해당 승인명세를 파일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8.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에게 판매한 물품 등의 하자, 전산조작 오류, 기타 정당한 사유 등의 이유로 승인명세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은행은 취소된 승인명세에 대하여 지급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승인명세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가.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선입금을 실행한 경우

나. 판매기업입금일이 도래한 경우

9. 판매기업이 승인명세를 취소,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명세 취소, 변경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0. 매매보호거래시 판매기업입금일 전영업일까지 권리이전(인수) 등록되지 않은 승인명세에 대해서는 판매기업입금일에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11.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승인명세 전송시, 은행은 지급보증하지 않으며 강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12. 승인명세의 구매기업약정번호, 승인금액, 결제일, 판매기업입금일, 매매보호여부 등은 변경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 등 기타항목 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② 판매기업 또는 구매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명세 전송에 의한 은행의 지급승인이 제한됩니다.

1. 은행의 내규 등에서 정한 여신의 비적격자인 경우
2. 본 여신 또는 은행과 약정한 타여신이 연체중인 경우
3.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가 등록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5. 지급승인한도나 구매기업별 최고승인한도 또는 구매기업 여신(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6. 본 계약에서 정한 지급승인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7.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판매대금 수금 용도 외의 승인명세를 전송하는 등,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8. 본 계약 또는 구매기업과 약정하는 여신거래약정서 "제 4조(감액 · 정지 조항)"에 의하여 판매기업 또는 구매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9. 승인명세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원인으로 지급 제한이 등록된 경우
10. 기타 구매기업과 체결한 약정 상 지급승인을 제한하기로 한 경우

③ 은행은 판매기업이 전송한 승인명세를 구매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제10조(판매대금의 입금)

① 판매기업이 전송한 승인명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판매대금이 입금됩니다.

1. 판매기업이 선입금신청하는 경우 : 선입금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개별대출이 실행되어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2. 거치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판매기업입금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개별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판매기업입금일 이전에 선입금한 경우, 거치기간 설정에도 불구하고 선입금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개별대출이 실행되어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3. 거치기간없이 만기입금하는 경우 : 결제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매매보호거래시 구매기업이 권리이전(인수) 등록하지 않은 승인명세에 대해서는 구매기업 명의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5-06-0559(5-3) / (2013. 07.01 개정)
(보존년한 : 약정해지후 5년)
준법감시인 심사필 약관-13-111(2013.4.17)

하나은행

② **선입금은 승인명세 전송 당일부터 판매기업입금일 전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승인명세상 선입금가능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선입금가능일부터, 매매보호거래방식인 경우에는 구매기업의 권리이전(인수) 등록일부터 가능합니다.**

③ 선입금은 승인명세 건별로 승인금액 범위 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분할하여 취급이 가능합니다.

제11조(선입금의 제한)

다음 각항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입금을 제한합니다.

1. 승인명세 또는 판매기업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원인으로 인해 지급보류가 등록된 경우
2. 구매기업의 요청 또는 당행의 여신관리 목적상 필요에 의해 선입금 금지가 등록된 경우
3.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판매대금 수금 용도 외의 지급승인을 하는 등,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이 역구매론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지급보류)

승인명세 또는 판매기업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송달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1. 구매기업으로 송달되는 경우
   가. 해당 승인명세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에는 구매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승인명세를 취소하고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에 직접 처리하기로 합니다.
   나. 일부라도 선입금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매기업로부터 지급보류신청을 받아 잔여액에 대하여 지급보류등록 하기로 합니다.
2.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송달되는 경우
   가. 특정 승인명세에 대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선입금하지 않은 승인잔액이 있으면 지급보류등록을 하기로 합니다.
   나. 판매기업에 대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승인명세에 대하여 (가)압류 금액에 달할 때까지 지급보류등록 하며, 추가적인 지급승인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보류등록한 승인명세의 처리
   가. 지급보류 등록된 승인명세에 대하여는 판매기업입금일 도래시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을 보류하고 은행의 미지급금 계정에 예치하기로 합니다.
   나. 은행의 미지급금계정에 예치된 금원의 처리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3조(대위변제 의무)

구매기업이 결제일(연장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연장기간 종료일)까지 개별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등 거래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별대출 상환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계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포함하여 원리금 전액을 판매기업이 대위변제하기로 합니다.

제14조(감액 · 정지)

① 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 ·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5조의 지급승인한도 금액을 줄이거나, 계약기간 만료일에 불구하고 지급승인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 · 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15조(자료의 제출 등)

1. 판매기업은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가.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나.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다.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라.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융도확인서류 등
2.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가.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나.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다.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16조(통지의무)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이 재산, 경영, 업황, 기타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칠 상황에 관한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은행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7조(이용시간)

① 은행 영업점을 통한 거래는 은행 영업시간 중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평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조회	24시간	가능
판매기업 등록	08:00 ~ 22:00	불가
선입금 신청	08:00 ~ 19:00	불가
구매자료 승인/변경/취소	08:00 ~ 22:00	불가
(당일전송 당일만기)	08:00 ~ 15:00(EDI 14:00까지)	
(당일전송 익영업일만기)	08:00 ~ 20:00(EDI 16:00까지)	
벤더입금	08:00 ~ 19:00	불가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이 은행에 등록한 연락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단, 등록된 연락처의 변경 후, 은행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본점,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고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보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5-06-0559(5-4) / (2013. 07.01 개정)
(보존년한 : 약정해지후 5년)
준법감시인 심사필 약관-13-111(2013.4.17)

하나은행

제18조(계약의 체결 및 변경)

① 역구매론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본 계약을 보충하기 위하여 은행, 판매기업 및 구매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사이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④ 필요한 경우 은행과 판매기업은 협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9조(면책)

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판매기업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② 본 계약의 이용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5조(위험부담 · 면책조항)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0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내 지급승인된 승인명세에 대하여는 상환될때까지 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본 계약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이 가장 우선적용되고, 다음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순서로 합니다.
④ 은행과 판매기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21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 지역본부 또는 판매기업의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2조(기타 특약사항)

(서명날인)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은행과 판매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20 년 월 일

[은행] [판매기업]

주식회사 **하나은행**

지점장 (인) 기업명 : (인)

주 소 : 주 소 :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 계약을 체결함.	판매 기업	(인)

5-06-0559(5-5) / (2013. 07.01 개정)
(보존년한 : 약정해지후 5년)
준법감시인 심사필 약관-13-111(2013.4.17)

하나은행